Report

일본 지식재산 소송의 통계적 분석

최근 일본의 지식재산 심사, 심판, 소송에 관한 통계적 분석을 통해 그동안에 이루어진 일본 지식재산시스템의 개혁성과를 검토해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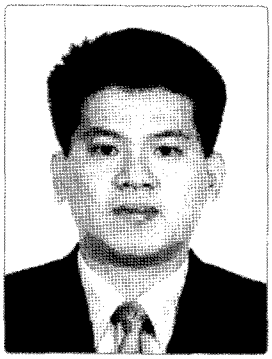

임 호 순
특허청 정밀기계심사과장

Ⅰ. 서론

Ⅱ. 일본의 지식재산권 출원, 심사 및 등록
1. 일본특허청 현황
2. 지재권 출원 및 심사건수
3. 지재권 등록건수

Ⅲ. 일본의 지식재산권 심판
1. 일본의 특허심판부 현황
2. 지재권 심판청구
3. 지재권 심판처리

Ⅳ. 일본의 지식재산권 소송
1. 일본의 법원 조직
2. 일본의 지식재산권 소송 체계
3. 심결취소소송
4. 지식재산권 민사소송
5. 특허권·실용신안권 민사소송 상세 분석

Ⅴ. 일본 변리사 등록건수

Ⅵ. 결어

Ⅰ. 서론

최근 우리나라는 「지식재산 기본법」을 제정하고 본격 시행(2011. 7. 20)함으로써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및 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한편 일본은 우리보다 앞서 2002년 총리 주도로 지식재산[1] 전략회의를 창설하였고, 이듬해인 2003년에는 구체적인 전략을 실행하기 위한 지식재산전략본부를 설치하였다. 또한 2005년에는 지식재산고등재판소(특허법원)를 신설하는 등 지식재산에 관한 법제를 꾸준히 정비하고 있다. 올해로 일본의 지식재산전략본부가 업무를 시작한 지 8년여의 기간이 경과하였는데, 본 원고는 최근 일본의 지식재산 심사, 심판, 소송에 관한 통계적 분석을 통해 그동안에 이루어진 일본 지식재산시스템의 개혁성과를 검토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 지식재산권 관련 제

도 개선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Ⅱ. 일본의 지식재산 출원, 심사 및 등록

일본특허청 현황

일본특허청은 총무부, 심사업무부, 특허심사 제1부~제4부, 심판부를 두고 있다. 심사업무부가 출원 및 등록업무, 상표와 디자인사건의 심사업무를 처리하고, 특허심사 제1부는 농수산업, 광학, 물리 등의 분야에 대한 특허심사, 제2부는 기계분야 특허심사, 제3부는 화학분야 특허심사, 제4부는 전기분야 특허심사를 담당한다. 심판부는 심판사건 및 상표등록이의신청 사건을 처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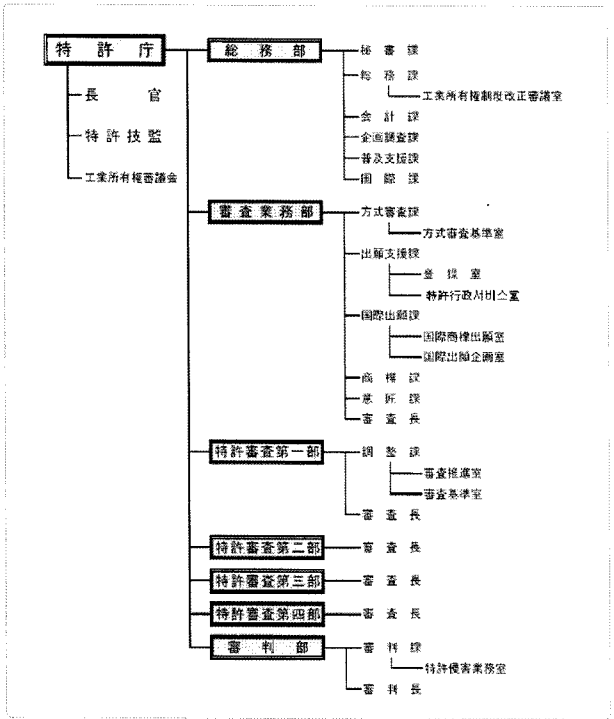

〈일본특허청 조직도〉

일본특허청의 2011년 총 인력은 2,900명이고, 그 중 심사관은 1,900여 명, 심판관은 387명에 달한다.

연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총 정원	2,470	2,479	2,555	2,651	2,716	2,800	2,901	2,904	2,903	2,895
심사관	1,304	1,325	1,442	1,557	1,668	1,768	1,882	1,894	1,904	1,910
심판관	395	396	392	389	386	386	386	387	387	387
일반직원	771	758	721	705	662	646	633	623	612	598

〈일본특허청 정원 추이〉

2011년 일본특허청의 디자인심사관은 51명, 상표심사관은 148명, 특허심사관은 1,711명이다. 최근에는 특허분야 심사대기기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특허심사관을 꾸준히 늘리고 있다[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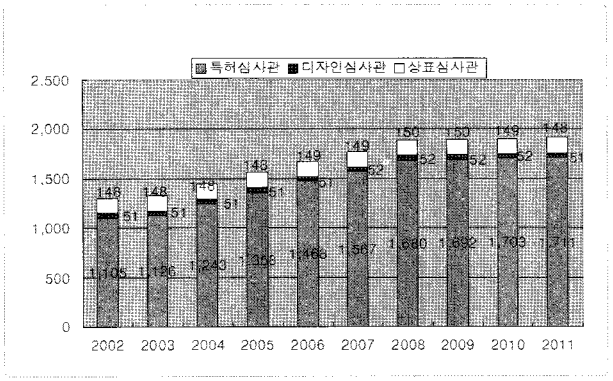

〈일본특허청 심사관 정원 추이〉

지식재산 출원 및 심사 건수

일본의 지식재산 출원건수는 2001년 60만건에 달했으나 일본의 경기침체 영향으로 2010년 50만건까지 감소하였다. 특허 및 실용신안이 35만건, 상표 및 디자인이

1) 일본은 "知的財産"이라고 표기하나, 본 원고에서는 우리나라 지식재산기본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지식재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2) 참고로 우리나라 특허청의 2011년 총 정원은 1,576명이고 그 중 상표디자인심사관은 150여 명, 특허심사관은 710여 명, 심판관은 99명이다.

15만 건 정도이다.[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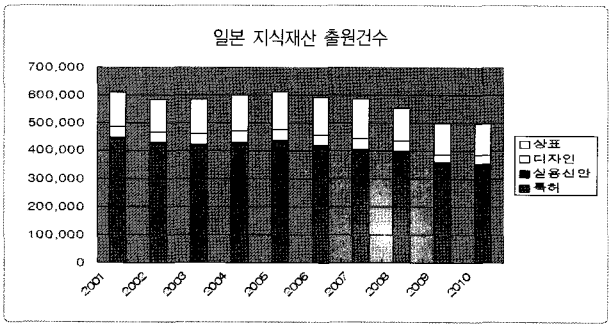

연도	특허 출원	특허 심사청구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출원 합계
2001	439,175	253,826	8,778	39,423	123,754	611,130
2002	421,044	237,345	8,587	37,230	117,406	584,267
2003	413,092	243,836	8,155	39,267	123,325	583,839
2004	423,081	328,105	7,983	40,756	128,843	600,663
2005	427,078	396,933	11,386	39,254	135,776	613,494
2006	408,674	382,116	10,965	36,724	135,777	592,140
2007	396,291	376,310	10,315	36,544	143,221	586,371
2008	391,002	347,836	9,452	33,569	119,185	553,208
2009	348,596	254,368	9,507	30,875	110,841	499,819
2010	344,598	255,192	8,679	31,756	113,519	498,552

〈일본의 지식재산 출원건수〉

지식재산출원에 대한 심사대기기간은 특허분야가 2001년 22개월에서 2010년 28개월까지 증가한 반면, 상표 및 디자인분야는 2001년 11개월에서 2010년 5개월로 줄었다.[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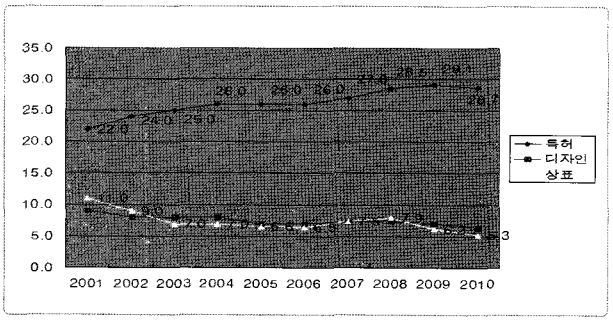

〈일본 심사처리기간 추이〉

특허출원 중 특허를 받는 비율(특허결정률)은 50% 내외인데, 최근에는 조금씩 상승하는 추세이다[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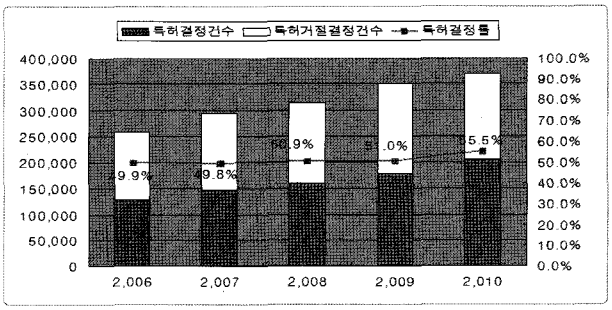

〈특허결정률〉

지식재산 등록건수

일본의 지식재산 등록건수는 2001년 25만 건에서 2010년 35만 건까지 꾸준히 늘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지난 10년 동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분야는 거의 동일한 수준인데 비해, 특허건수는 2001년 12만 건에서 2010년 22만건으로 1.8배 가량 증가하였다[6].

연도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록 합계
2001	121,742	8,762	32,934	93,548	256,986
2002	120,018	7,651	31,503	105,114	264,286
2003	122,511	7,669	31,342	108,568	270,090
2004	124,192	7,356	32,681	95,866	260,095
2005	122,944	10,569	32,633	94,439	260,585
2006	141,399	10,591	29,689	103,435	285,114
2007	164,954	10,080	28,289	96,531	299,854
2008	176,950	8,917	29,382	100,243	315,492
2009	193,349	9,019	28,812	108,717	339,897
2010	222,693	8,571	27,438	97,780	356,4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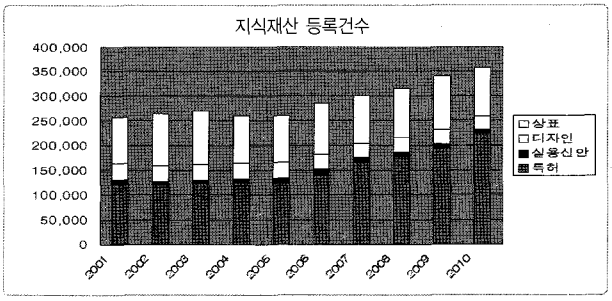

〈일본의 지식재산 등록건수〉

Ⅲ. 일본의 지식재산권 심판

일본특허청의 심판부 현황

일본특허청은 심판부를 두고 특허청의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 보정각하결정불복심판, 특허정정심판, 무효심판, 상표취소심판, 상표등록이의신청 및 판정[7] 등의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심판부는 특허 · 실용신안 32개 부문, 디자인 2개 부문, 상표 4개 부문으로 나누어져 있고, 심판업무를 지원하는 심판과와 송무실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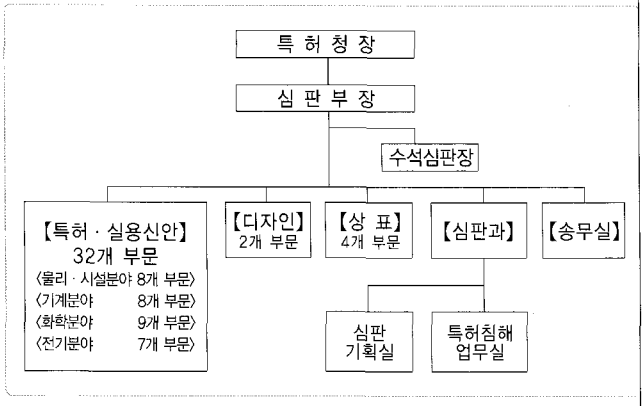

〈일본특허청 심판부 조직도〉

일본 심판부의 심판관은 258명이고 심판장은 129명이다.

구분	일본(2011)			한국(2011)		
	심판장	심판관	합계	심판장	심판관	합계
계	129	258	387	11	88	99

지재권 심판 청구

일본의 지재권 심판청구는 3만 건 내외이다. 심판청구는 2007년까지 꾸준히 증가하다가 글로벌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최근에 일부 감소하였다.

연도	거절결정 불복심판	보정각하 불복심판	무효 심판	정정 심판	상표취소 심판	판정	이의 신청	전체 건수
2005	25,440	14	563	230	1,597	88	691	28,623
2006	29,062	27	495	204	1,601	72	700	32,161
2007	35,488	16	515	144	1,757	106	615	38,641
2008	32,981	10	463	139	1,612	47	513	35,765
2009	26,065	17	420	159	1,413	50	480	28,604
2010	29,682	5	373	136	1,380	72	431	32,079

〈일본의 지재권 심판청구 추이〉

심판사건 중 92%는 거절결정불복심판에 관한 것이고, 무효심판은 400건 내외이다.[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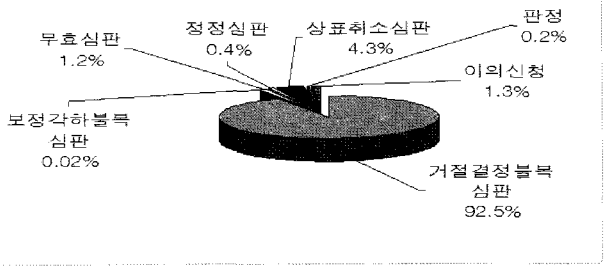

〈심판종류별 점유율(2010)〉

3) 2010년 우리나라 지식재산 출원건수는 특허 170,101건, 실용신안 13,361건, 디자인 57,187건, 상표 121,125건이고, 합계는 362,074건이었다(출처: 2010 지식재산통계연보 및 2010년도 지식재산백서, 특허청 발간).

4) 우리나라의 2010년 지재권 심사대기기간은 특허분야 18.5개월, 상표 10.6개월 및 디자인 9.4개월이다.

5) 우리나라의 특허결정률은 2009년에 60.4%, 2010년에 63.9%이었다.

6) 우리나라 2010년 지식재산 등록건수는 특허 68,843건, 실용신안 4,301건, 디자인 33,697건, 상표 53,136건으로 전체 합계는 159,977건이었다.

7) 일본의 판정제도는 1960. 4. 1.부터 시행되었는데, 이전에 존재하던 권리범위확인심판제도를 대체한 것이다. 일본도 1960년 이전에는 현행 우리나라의 권리범위의 확인심판을 두고 있었는데,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결의 효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어 오랜 논의를 거쳐 대안으로 판정제도가 도입되었다. 판정은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결과 달리, 특허권의 설정에 관여한 행정청이 행하는 일종의 감정이어서 법적구속력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일본 특허법 제71조는 「특허발명의 기술적 범위에 대하여는 특허청에 판정을 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8) 2010년 우리나라 지재권 심판청구는 13,872건이었고, 그 중 거절결정불복심판 10,272건, 보정각하불복심판 2건, 무효심판 1,426건, 정정심판 100건, 상표취소심판 1,182건, 권리범위확인심판 864건, 취소결정불복심판 26건이었다.

지재권 심판처리

특허거절결정 불복심판사건 중 명세서가 보정된 사건에 대해서는 심판관지정 전에 심사관에게 배당(심사전치) 되어 심사를 수행하는데 이 과정에서 연간 1만여 건의 특허가 등록되며 해당 심판은 소멸된다.[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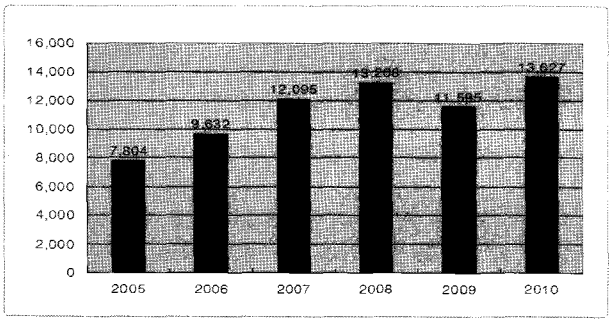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 중 심사전치 등록건수〉

심사전치 등록사건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판관에게 배정된다. 심판관이 처리하는 사건 수는 약 2만 3천건 내외로 최근 5년간 큰 변화가 없었고, 이 중에서 거절결정불복심판이 85%~90%를 차지하고 있다. 지재권 침해소송과 관련이 깊은 무효심판은

	거절결정 불복심판	보정각하 불복심판	무효 심판	정정 심판	상표취소 심판	판정	이의 신청	합계
2005	17,056	29	601	263	1,538	87	2,407	21,981
2006	20,679	19	551	224	1,590	80	1,012	24,155
2007	20,783	27	462	163	1,650	93	706	23,884
2008	21,298	15	532	135	1,763	85	513	24,341
2009	21,096	14	504	159	1,612	50	564	23,999
2010	21,378	15	392	142	1,387	60	442	23,8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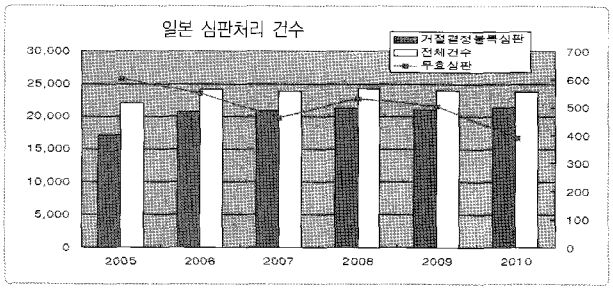

〈일본 특허심판부의 심판처리건수〉

2.0~2.5% 정도를 차지하는데 최근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10)]

2010년 거절결정불복심판의 평균심리기간은 특허 · 실용신안의 경우 24개월, 디자인의 경우 6개월, 상표의 경우 11개월이다.[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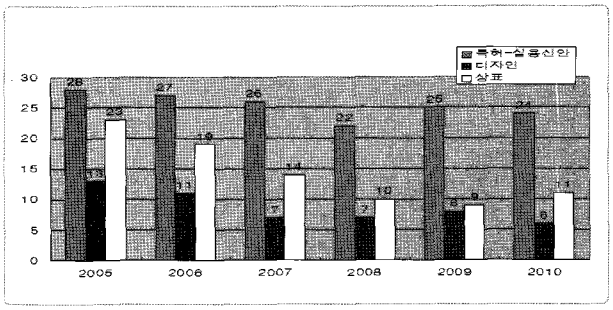

〈거절결정불복심판의 평균심리기간(개월)〉

심판관이 거절결정불복심판에서 심사관의 거절결정이 잘못되었음을 이유로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비율(심사결과에 대한 취소환송률)은 전체적으로 45% 내외이다. 다만 분야별로 편차가 커서 특허 · 실용신안은 40% 내외인데 비해, 상표 및 디자인은 60%에 달한다.[12)]

(단위 : %, 건)

연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특허 · 실용신안	42.5 5,384/12,662	37.7 6,262/16,610	37.6 6,290/16,726	35.8 6,511/18,209	38.5 7,400/19,245	43.5 8,503/19,545
디자인	48.7 579/1,189	52.0 608/1,169	57.7 627/1,086	68.8 688/1,000	66.8 475/711	60.1 309/514
상 표	70.0 2,243/3,205	74.1 2,148/2,900	79.5 2,363/2,971	76.8 1,605/2,089	59.7 681/1,140	60.7 801/1,319
합 계	48.1 8,206/17,056	43.6 9,018/20,679	44.7 9,280/20,783	41.3 8,804/21,298	40.6 8,556/21,096	45.0 9,613/21,378

주) 출처 : 일본 특허청 연보(2010)

〈거절결정불복심판 취소환송율〉

무효심판, 정정심판 및 판정의 평균심리기간은 6~7개월가량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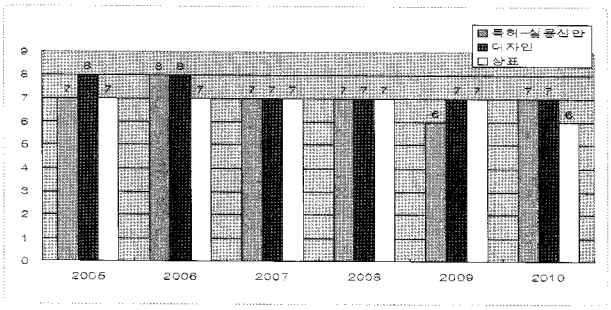

〈무효심판, 정정심판 및 판정의 평균심리기간(개월)〉

일본 특허심판부가 무효심판청구를 받아들여 특허 등을 무효시키는 비율은 2006년 55.0%에서 2010년 38%로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13]

(단위 : %, 건)

연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특 허	55.7 211/379	61.4 194/316	54.8 142/259	58.7 182/310	43.5 123/283	40.2 102/254
실용신안	44.8 13/29	60.9 14/23	58.8 10/17	58.8 10/17	66.7 4/6	50.0 4/8
디자인	44.4 20/45	60.7 17/28	61.9 13/21	36.4 12/33	42.9 6/14	66.7 8/12
상 표	36.5 54/148	42.4 78/184	50.9 84/165	41.3 71/172	41.3 83/201	30.5 36/118
합 계	49.6 298/601	55.0 303/551	53.9 249/462	51.7 275/532	42.9 216/504	38.3 150/392

〈일본 심판부의 무효심판 인용률〉

심판당사자가 특허청 심판부 심결(결정)에 대해 불복하여 법원에 제소하는 비율은 전체적으로 4~5% 수준이다. 세부적으로는 거절결정불복심판, 보정각하결정불복심판, 정정심판 등 결정계심판에 대한 제소율은 2~3% 수준으로 매우 낮은데 비해, 무효심판 및 상표취소심판 등 당사자계심판에 대한 제소율은 12~13%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높다.[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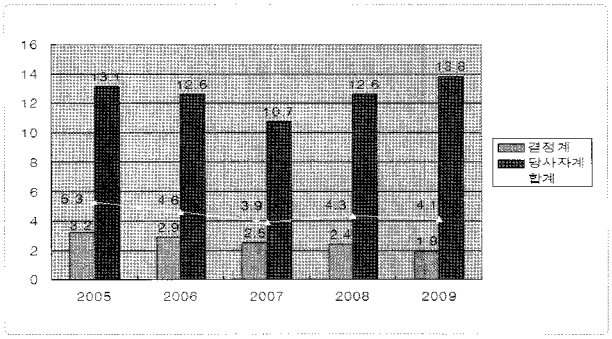

〈일본심판부 심결에 대한 제소율(%)〉

2011. 12

다음호에 계속

9) 2010년 우리나라 심사전치 등록건수는 4,501건이었다.
10) 우리나라의 2010년 심결건수는 9,274건인데, 그 중 거절결정불복심판 5,808건, 보정각하불복심판 5건, 무효심판 1,427건, 정정심판 93건, 상표취소심판 1,098건, 권리범위확인심판 796건, 취소불복심판 47건이었다.
11) 우리나라의 2010년 평균 심판처리기간은 특허 및 실용신안은 10.6개월, 디자인 및 상표는 9.1개월이었다.
12) 우리나라의 2010년 거절결정취소환송율은 특허실용신안 26.8%, 디자인 37.6%, 상표 62.3%이고 전체적으로는 37.0%이었다.
13) 2010년 우리나라의 무효심판 인용률은 51.9%이었는데, 특허 53.1%, 실용신안 62.5%, 디자인 58.1%, 상표 41.7%이었다.
14) 우리나라 2010년 심결결과에 대한 불복 제소율은 15.7%이었고, 그 중 결정계심판결과에 대한 불복제소율은 7.3%, 당사자계심판결과에 대한 불복제소율은 26.1%이었다.